

사적재산권의 불완전성에 관한 연구: 인터넷 음원 사례를 중심으로*

이 혁 우**

..... <目	次>
I. 들어가며	IV. 사례분석: 인터넷 음원 사례
II. 이론적 고찰	V. 결론
III. 이론의 형성: 불완전한 사적재산권 양태, 원인 및 해소 메커니즘	

<요 약>

재산권의 주체가 명확한 재화, 즉 사적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된 경우라도 권리실현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재산권이 성립하려면 재화의 소유,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지배권이 완전해야 하지만, 현실의 재화 중 이런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적재산권의 불완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사적재산권이 불완전하게 되는 이유는 재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재산권자는 재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유인이 없다. 또한 재산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재산권의 침해를 배제하는데 드는 거래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은 시장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클수록 보다 완전해 질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재화 가치에 대한 측정을 보다 낮은 거래비용으로 보다 정확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되거나 정부에 의해 사적재산권 보호 규칙이 정해지고 이것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경우에도 보다 완전해 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런 사적재산권의 불완전성의 양태, 원인, 해소 메커니즘에 대한 가설을 인터넷 음원 사례의 분석으로 입증했다.

【주제어: 사적재산권, 시장, 거래비용, 기술의 발달, 인터넷 음원】

* 본 논문은 2010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입니다. 본 논문을 세심하게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애초의 거친 논리와 오류가 대폭 수정될 수 있었습니다.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hwlee@pcu.ac.kr)

논문접수일(2011.6.28), 수정일(2011.8.17), 게재확정일(2011.8.29)

I . 들어가며

재산권 연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템세츠의 명제(the Demsetz's thesis)라는 것이 있다. 재산권의 형성, 즉 자연 상태의 어떤 재화에 대한 권리가 확립되는 것은 해당 재화의 가치가 증가하여 이를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gain)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이런 가설은 재산권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거래비용이 소유권의 확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충분히 작아야지만 성립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사람들이 굳이 그런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하기 위해 애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연에 있는 재화 중 무수히 많은 것들이 여전히 재산권이 설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이유이다.

이처럼 재산권 연구자들에게는 재산권 설정이 중요한 연구주제이기 때문에 사적재산권(private property right)과 공유재산권(common property right)은 재산권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어 왔다(Demsetz, 1967, Alchian & Demsetz, 1973, Umbeck, 1977, Barzel, 1989). 재산권의 유형을 이렇게 둘로 양분하고 분석 대상이 되는 재화의 속성을 이들 둘 중 하나로 정의한 후, 왜 그런 유형의 재산권이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핵심적인 이슈이기 때문이다. 재산권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한 Demsetz(1967) 역시 위에서 제시한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인디언들이 야생비버에 대해 재산권을 설정하기 시작한 것은 유럽에서 비버가죽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그 가치가 증대되었기 때문임을 분석하기도 했으며, Umbeck(1977)은 미국에서 야생들소(bison)에 대한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 형성되지 못한 원인으로 재산권 설정에 드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임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이후에도 공유재산권이 어떻게 사적재산권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2002년 *Journal of Legal Studies*에서는 이것을 특집주제로 꾸리기도 했다.

이런 재산권에 대한 연구들은 재산권 이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사적재산권이 성립하는 조건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적재산권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다수의 재화들이 여전히 공유재산권의 영역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가능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유재산권 아래에 있는 재화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재화에 대해 사적재산권을 설정하는데 드는 거래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재산권에 대한 연구경향에는 매우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적재산권이

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가치실현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적재산권이 명백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자가 자신의 재화를 소비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재화의 정확한 가치만큼을 거래당사자와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겠지만 실제 이런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다. 사적재산권의 불완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적재산권이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양태와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이런 사적재산권의 불완전성이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궁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에 대한 이해는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재화에 대한 재산권의 양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 명백하게 존재하는 사적재산권의 불완전성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공유재화에 대해 사적 재산권이 설정되는 것만으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재산권 이론을 되풀이해서 주장한다면 이론을 위한 이론은 될 수 있을지언정 현실과는 동떨어진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산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재산권의 불완전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를 인터넷 음원의 사례의 분석을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재산권 논의의 중요성

“재산권을 확정하면 사회적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¹⁾ 재산권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중요한 명제이다. 권리의 주체가 명확하게 정의된 재화는 사람들에게 가치보전과 증식을 위한 인센티브를 유발시켜 가장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Alchian & Demsetz, 1973, Umbeck, 1977). 또한 권리주체가 명확하게 확립된 재산권은 개별행위자의 행동을 통제하여 이들이 재화의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한 지식을 활발하게 활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원을 절약할 유인을 갖게 해 주어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조절할 수 있게 해 준다(Kasper & Streit, 1998). 재산권을 통해 이런 긍정적 효과를

1)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사적) 재산권은 외부자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에 대한 투자의 가치를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재산권은 자원을 활용하는데 소유자들은 자신의 시간, 정력, 노동을 투여하게 된다. 더구나 재화나 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는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를 가장 가치 있는 방식으로 교환하게 해 준다. 이런 이유로 (사적) 재산권은 구성원들에게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Rose, 1994).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특정 재화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만 그 재화에 대한 소유 및 활용에 대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권리가 없는 타인이 이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를 배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통해 타인의 재화와와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화의 사용가치를 증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Angel, 2000:85).²⁾

반면, Barzel(1989)의 지적처럼 재산권이 완벽하게 확립되지 못하면 그런 재화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재화를 조금이라도 더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런 경쟁은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것이 된다.³⁾ 이 과정에서 무수한 사회적 자원이 새로운 가치창출이 아니라 기존 재화에 대해 권리를 설정하는데 활용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중요한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로 일컫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⁴⁾ 재산권의 양태에 따라 사람들은 최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도 있고 최대한의 무임승차를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냥한 동물에 대해 (사적권리가 아닌) 공동권리(communal right)의 원칙을 정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투입해 직접 사냥에 나서는 대신 남들이 사냥한 것을 나누어가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사회전체적으로 과소사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Alchian & Demsetz, 1973). 이런 논리로 재산권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나 자원에 대한 권리가 명확한 경우 최대의 효율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권리주체가 자신에게 가장 큰 효용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화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재산권이 가진 제도로서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재산권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그 공통적인 속성으로 재화

2) 교환은 사회적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교환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화의 가치보다 교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화의 가치가 크다고 여기기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이에 대해 에르난도 데 소토는 자본의 미스터리에서 제3세계의 경우 자본주의의 성공에 필요한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왜 그렇게 가난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제3세계의 빈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만 해도 9조3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한 재산권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산이 자본화 될 수 없으며 사람들이 서로 알고 신뢰하는 좁은 동네를 벗어나서는 거래될 수 없고,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담보로 대출할 수 없으며 투자로 출자될 수 없다면서, 결국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공식 재산법 체제를 확립하고 그 법을 기초로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전환과정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고 주장했다(Rifkin, 2004).

4) 재산권에 대해서는 많은 철학자와 법학자들이 이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아마 근대 경제학자들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정의한 학자는 홉스(Hobbes)일 것이다. 그가 제시한 자연상태(state of nature)는 재산권의 open access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재산권에 대해서는 Blackstone, Hume, Locke, Smith 등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었는데, 이들 모두는 재산권을 부를 창출하고 갈등을 방지하는 중요한 사회제도로 인식했다(Leuck & Miceli, 2007:186).

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가능한 상태(full control over given resource)를 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Nicita, Rizzolli & Rossi, 2005). 이것은 Demsetz(1967)의 표현을 빌리면 재화에 대한 배제성(exclusivity)이 있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배제성이 갖는 의미는 해당 재화와 관련된 모든 잠재적인 요구(potential claimant)들을 재산권자가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재화에 대한 소유자의 결정, 재화의 사용 방법의 결정, 재화의 이전에 대한 결정이 모두 재산권자에게 전속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특정한 재화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재화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재화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 모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Umbeck, 1977).⁵⁾

이런 재산권의 개념을 들어 재산권 논의의 중요성을 다시 정리해 보면 재화를 사용하고, 재화로부터 수익을 얻고, 재화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군가에게 배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가에 따라 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달라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⁶⁾ 즉 재화를 사용하는 권리가 특정한 경제주체에 배타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런 재화를 사용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Demsetz, 1967). 재화사용에 있어 개인의 무임승차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Hardin(1968)이 제시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또한 재화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배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재화를 활용해 가치의 증식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다. 사냥의 결과 얻어진 고기가 사냥한 사람에게 배타적으로 소유되지 못한다면 사냥을 하려는 사람들의 인센티브는 사라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까지의 사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화에 대한 교환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해당 재화가 보다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게 한다. 교환은 거래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5) Cheung(1974)는 재산권은 세 가지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인데, 첫째는 소유와 사용에 관한 권리로 재화의 배타적 사용과 타인사용의 배제가능성, 둘째는 수익에 관한 권리로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배타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리이며, 셋째는 처분에 대한 권리로 재화의 새로운 소유주가 될 사람과의 계약을 통해 그 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정리하기도 했다.

6) 이런 이유로 Demsetz(1967)은 재화에 대한 재산권의 확정은 사회전체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의 의미

이상의 논의로부터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재화에 대해 사용, 수익, 교환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야만 재화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재산권 이론의 핵심가설이며 이처럼 재화에 대한 권리 주체의 설정이 배타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공유재산권이 아닌) 사적재산권이 설정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사적재산권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권리의 주체가 확정된 재화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Nicta, Rizolli & Rossi, 2005, Leuck & Miceli, 2007, Demsetz, 1988, Barzel, 1989:2). 이런 현실을 두고 Barzel(1989)은 재산권은 절대로 완전하게 정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은 무수히 많은 속성(attribute)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각각에 대한 권리의 소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된 권리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들고 있기도 하다.

한편 사적재산권을 둘러싼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최근에는 소위 불완전한 사적재산권 이론(theory of incomplete property right)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Nicita, Rizzolli, Rossi, 2005). 이들에 의하면 재산권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서는 재화의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의 확보를 사적재산권의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재산이 갖는 모든 속성을 완벽히 정의하여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전한 사적재산권이 확보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⁷⁾

Nicta, Rizolli & Rossi(2005)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의 양태를 재화를 보다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 재화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완전한 상태, 재화를 둘러싼 가치다발(bundles of value on right)이 분할되지 못하는 상태로 구체화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불완전한 재산권 상태에서는 재산권 이론에서 기대하는 재산권의 확립으로부터 사회적 효율이 달성된다는 가설이 달성되기 어렵게 된다. 재산권 이론에서 제시하는 재산권의 확정과 이를 통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상태가 현실에서 완벽하게 달성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드문 것이다.

3. 선행연구의 검토

지금까지 제도로서의 재산권의 의의 및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의 개념과 속성에 대해 살펴

7) 김일중(1995:70), 이민창(2006) 역시 이런 견해를 정리하고 있다.

보았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에 대한 연구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을까? 최근의 주장을 보면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의 중요한 영역인 계약(contract)과 재산(property)에서 전자인 계약에 있어서의 불완전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⁸⁾ 후자, 즉 재산에 대해서는 이런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Nicita, Rizzolli, Rossi, 2005:2). 그리고 Barzel(1989)은 이처럼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이유를 공동재산(common property)과 사적재산(private property)의 이분법(dichotomy), 즉 재산권을 잘 정의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⁹⁾ 이렇게 되면 재산권 설정 이후, 그것이 불완전하게 실현되는 단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되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이론을 위한 논의에 간혀버리기 쉽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이 어떤 패턴을 거쳐서 해소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것은 재산권 이론의 영역에 매우 큰 공백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확정 메커니즘을 고민한 학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Demsetz(1967)는 공공의 영역의 존재하는 재화의 가치가 증가하면 소유권을 확립함으로써 이익(gain)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의 확정 메커니즘에 대한 가설을 제시했으며, 이 가설은 이후 Anderson과 Hill(1975)의 미국 서부에서의 토지 재산권의 확립에 대한 연구, Libecap(1978)의 미국 서부 광산 사례분석 등에서 입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Demsetz(1967)의 주장은 공식모형(formal model)으로 발전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다른 사례연구를 통해 재화의 가치가 증가해도 재산권이 형성되지 않는 등 그의 주장과는 상반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석유와 가스는 자원의 가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재산권이 명

8) 계약에서 핵심은 바로 계약에서 “빠진 조항(omitted clauses)”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계약에서 빠진 조항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계약당사자의 제한된 합리성,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또한 계약에서는 강박, 무능력, 착오와 같은 상황에 계약을 얼마나 강제할 수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 있는가의 문제도 중요하게 다룬다(박세일, 2000). 결국 이들 모두는 불완전한 계약과 관련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9) 재산권을 본격적으로 분석의 틀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Frank Knight(1924)가 “Some Fallacies in the Interpretation of Social Cos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38에서 사회비용(social cost)을 논의한 것, Scott Gordon(1954), “The Economics of a Common Property Resource: The Fishe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2, No.2.에서 공유재산(common property)의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그러나 이 후에도 학자들은 재산권에 본격적인 관심을 두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재산(property)은 공유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였고, 공유재산이 사적재산으로 전환되는 양상도 거의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Knight나 Gordon 조차도 자신의 분석에서 재산권이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중간양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Barzel, 1989:64).

확해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공유재산에서 나타나는 경쟁적 포획(capture rule)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Libecap, 1989), 이것은 미국의 야생들소(wild bison)의 사례에서도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Lueck, 2002, Lueck & Miceli, 2007:210).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에 대한 연구가 이런 상황에 봉착한 이유는 사적재산권의 설정과 실현에서 유발되는 거래비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언급이 거의 없고 특히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이 해소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Leuck & Miceli, 2007:209-211). 물론 이로 인해 이후의 연구자들은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이 확정되는 메커니즘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을 포함하여 이해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Barzel(1989)이 재산권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산권의 강도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소유자의 노력, 다른 사람의 재산권 취득 시도, 정보 보호의 함수로 보고 이 모든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너무 높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재화에 대해 재산권을 설정해도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기에 굳이 재산권을 설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후에도 재산권 확정에 드는 거래비용과 확정된 재산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낮을 때에만 재산권 확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었으며, Umbeck(1977)은 미국에서 야생들소의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산권이 형성되지 못한 이유로 야생들소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마디로 불완전한 재산권을 확정하는 것도 비용이 드는 일이기에 만약 특정한 재화나 자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이전하고 보호하는 행위에 비용이 존재하고, 그 비용이 충분히 높다면 재산권은 완전하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Barzel, 1989:2). 이런 경우 사람들은 재화나 자원을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남겨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의 확정과 관련한 이런 기존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체계적인 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의 양태와 유발되는 원인, 그리고 해소과정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시도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중 특히 사적재산권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권리다발(bundles of rights)의 가분성(divide-ability)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발달,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런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제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자.

Ⅲ. 이론의 형성: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의 양태, 원인 및 해소 메커니즘

1.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의 양태와 원인

재산권의 유형을 재화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주체가 설정되었는지 여부로 나누면 크게 공유재산권과 사적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재산권 이론가들은 이중 사적재산권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한다. 그러나 사적재산권이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그것이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적재산권의 불완전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은 크게 두 가지 양태를 보인다. 하나는 사적재산권 자체에 대한 가치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재산권 침해로 인해 사적재산권 중 일부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적재산권이 가진 가치가 정확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재화의 가치를 정확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치에 대한 측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적재산권이 설정된 재화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비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수익을 취할 때, 교환이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재화의 가치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런 재화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해 낼 수 없다면 그런 재화의 소유자는 측정이 어려운 만큼 재화가치의 실현이 불완전하게 된다. 소비·수익·교환·거래를 통해 얼마의 비용이 유발되었으며 얼마의 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한 계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Barzel(1989)이 어떤 재화이든지 그 주체를 확정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거래 비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지나치게 높게 되면 재산권은 결코 완전하게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예를들어, 식당주인이 테이블위에 소금을 무료로 올려두는 것이나 극장 주인이 좋거나 나쁜 좌석에 관계없이 손님에게 동일한 가격을 받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주인들이 명백하게 자신의 권리로 확립되어 있는 재화의 가치를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식당이든 극장이든 간에 손님이 사용한 소금이나 좌석의 가치를 주인들이 정확히 측정하고 그 가치만큼 정확히 요금을 받음으로써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데는 높은 거래비용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경우 식당주인이나 극장주인은 자신의 재산권을 완벽하게 행사하기 보다는 소금이나 좌석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불완전한 채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다음으로 재화의 가치가 타인으로부터 침해받는 경우에도 사적재산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렵게 된다. 이 경우 사적재산권의 핵심인 재화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의 행사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을 재산권자가 독점적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3자에 의한 사적재산권의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크게 민간주체에 의한 것과 정부에 의한 것으로 다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먼저 민간주체에 의해 사적재산권의 침해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예는 출판물이나 음반, 초상권 등에 대한 복제나 무단사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사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감시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사적재산권을 보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비용이 너무 커서 타인의 재산권 침해를 완벽하게 봉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압도하게 된다면 재산권의 소유자는 자신의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유재화처럼 방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높은 감독비용으로 인해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완벽히 감시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그에 부수하는 비용보다 낮은 것이다. 사적재산권을 가진 주체인 저작권자들이 많은 경우 자신의 재산권 침해상황을 방치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편 재화의 가치는 국가(정부)로부터 침해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개인의 사적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 공공복리나 사회보장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음을 정해 놓고 있으며, 헌법 제123조 제2항에서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개인의 사적재산권 활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해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개인의 사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양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사적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의 해소 메커니즘

그렇다면 이런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 위의 논의를 토대로 보면,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의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감독비용과 측정비용에도 불구하고 사적재산권의 실현에 따른 이익이 커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감독비용과 측정비용을 낮추어주는 것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적재산권 활용에 따른 이익의 존재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의 해소 메커니즘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에 존재하는 재화

들 중 어떤 특성을 가진 재화에 대해 권리의 확정이 시도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제적 포획의 규칙(rule of capture), 즉 선점을 통해 획득이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는 굳이 경제주체들이 재산권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⁰⁾ 따라서 이런 재화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재산권의 해소 메커니즘이 작동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Lueck, Dean, Miceli, 2007:200). 강이나 개울에 대해 사적재산권을 확정하기 위해 굳이 노력하지 않으면서 낚시를 하고 이렇게 얻은 물고기들을 자신의 소유로 하는 것, 바다에 대해 사적재산권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어류탐지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전형적인 예이다. 결국 어떤 재화에 대해 사적재산권의 확정이 시도되는 경우는 그 재화에 대한 소유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재화에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온전히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처럼 특정한 재화를 소유함으로써 그에 대한 실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 사람들이 그런 재화에 대한 재산권을 설정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재화 혹은 해당 재화의 산출물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재산권자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해당 재화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가 충분히 높아야 한다. 즉 재화에 대해 사적재산권을 실현하기 위해 드는 비용보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해당 재화에 대한 시장수요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거래를 통한 이익의 창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재산권의 설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증대된 모피수요로 인해 모피시장이 활성화 되어 인디언들이 포획한 동물들의 모피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Alchian & Demsetz, 1973). 이것은 비버가죽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유럽인들이 Labrador에 도착하기 전, 비버의 가치가 낮았을 때에는 비버의 서식지는 공유지로 남아 있었지만 비버가죽의 거래에 있어 유럽시장으로의 접근이 가능해져 비버가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비버가죽의 가치는 올라갔고 그 결과 비버의 서식지가 사유재산으로 변화했던 것이다(Demsetz, 1967).

2) 측정비용과 감독비용의 감소

재화소유의 실익이 존재하고, 그런 재화의 시장가치가 충분히 높다고 해서 사적재산권이

10) 이렇게 모두에게 접근이 개방된 재화(open access)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굳이 사적재산권을 설정하려 하지 않는다. 사적재산권을 설정하지 않고서도 선점의 원칙에 의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해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조건은 경제주체들에게 그런 재산권을 설정하고 실현하려는 유인을 유발시킬 뿐이다. 따라서 사적재산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적재산권이 불완전한 양태가 해소되어야 한다. 즉 재화의 가치에 대한 측정비용(measurement costs)과 타인의 재화사용에 대한 감독비용(monitoring costs)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다.

(1) 재화가치의 측정가능성 해소

앞에서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의 양태로 재화의 가치가 시장에서 실현되지 않은 경우를 들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재화에 대한 과도한 측정비용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재화가치에 대한 측정비용이 높으면 정확한 가치측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재화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재화가치의 측정비용이 높아지게 될까? 이를 위해서는 재화를 구성하는 가치단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의 재화 속에는 다양한 가치의 다발이 존재하고 있다. 식당에서 파는 식사 한 끼도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밥, 국, 각종 반찬, 연료비, 서비스 등에 대한 가치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하나의 재화에 포함된 다양한 가치를 분리해서 계산하는데 높은 비용이 들게 된다면 사적재산권은 불완전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논리이지만 이런 경우 재화 속의 개개의 가치의 실현이 정확히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에서 든 예에서 식사 한 끼를 구성하는 밥, 국, 각종반찬, 연료비, 서비스 등 각종의 가치다발들을 정확하게 분리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유발되고 이들 각각에 대해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도 높은 비용이 유발된다면 식사 한 끼의 정확한 교환가치를 정확하게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적재산권의 실현에는 불완전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식사 한 끼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할지라도 그 가치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재화의 사용, 수익,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행위에 있어 정확한 시장가치가 포함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을 유발시키는 측정비용의 문제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재화를 각각의 가치다발로 분리하고 그 각각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술의 개발이다.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술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하면, 특정한 재화가 누구의 권리 아래에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재산권을 사용·수익·처분함에 있어서도 재산권 주체가 자신이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화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재화에 대한 가치 측정기술은 재화에 대한 시장가치가 높은 경우 개발되게 된다. 재화에 대한 시장가치가 높지 않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사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않지만 만약 그것이 시장에서 높은 가치로 교환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자신이 보유한 재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려 들 것이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 다양한 가치 측정기술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모피가치가 올라가자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동물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이다(Alchian & Demsetz, 1973). 목록작성을 위해서는 각 동물들을 모피의 가치에 따라 분류하여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측정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사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 제도

한편, 사적재산권은 그 가치가 타인으로부터 침해되는 경우에도 불완전하게 존재한다. 타인으로부터의 재산권 침해가 보호되지 않으면 사적재산권의 보유자는 자신의 재화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재화의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의 해소를 위해서는 측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치측정 기술의 개발과 함께 사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구비가 필요하다. 아무리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어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에 배타적으로 속한 사적재산권이 다른 경제주체에 의해 무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을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되지 않는다면 사적재산권의 원활한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연한 논리이지만 이렇게 사적재산권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재화에 대한 사적재산권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어떤 재화에 대해 재산권의 소재가 누구인지가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재화를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재산권의 주체가 정해지지 못한 상황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우 사적재산권의 보장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일차적으로는 개개의 재산권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재화에 대한 사적재산권을 보유한 개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재화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것처럼 여기에는 매우 높은 비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재화에 대한 사적재산권 보유자가 불특정다수의 권리 침해 행위를 완벽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개인에 의한 사적재산권의 보장은 현실적으로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바로 여기에서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드러난다. 즉 정부는 민간에서 개인들에 의해서는 완전하게 실현되기 어려운 제3자의 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계하고 이에 개입해야 하는 사적재산권에 대한 최후의 보장자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민창(2006)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의한 사적재산권 보장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즉 사적재산권의 보장을 개인에게만 부여하면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툼이 발생하기 쉽고 그 결과 가치 있는 자원의 낭비는 물론 경제적 성장의 잠재가능성까지 잠식시킬 가능성이 높고 개별적 집행에 의한 낭비가 발생하여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집합적 행위의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에 의한 사적재산권 보호 노력은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특정인의 재산권 보호로 인해 편익을 보는 무임승차자에게 강제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기는 어렵기도 하다.

IV. 사례분석: 인터넷 음원 사례

1. 인터넷 음원, 불완전한 사적재산권 상태: 양태와 원인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음원 시장 역시 불완전하다. 음원의 가치가 시장에서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3자로부터 침해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적재산권의 대상인 인터넷 음원의 불완전성은 점차 해소되어 왔다. 인터넷 음원의 가치가 시장에서 점차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음원시장에 인터넷이라는 망의 구축과 mp3라는 음원압축 기술의 발전이 미친 막대한 영향 때문이었다. 이들 기술의 발달로 음원의 거래는 전통적인 음반시장이 아닌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시장에서 부호화된 데이터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음원시장의 거래단위가 변경되어 과거에는 10여곡이 수록된 음반단위로 이루어지던 음원거래가 1곡 단위, 나아가서는 1곡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 음반시장보다 인터넷 상에서의 음원은 교환과 거래도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과거 음반시장에서 유통되던 음원은 현재의 디지털화된 음원에 비해 오프라인의 음반시장을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음원시장의 변화는 과거에 비해 음원 하나하나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 음원의 가치가 100% 완전하게 시장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음원 하나하나의 가치가 정확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음원의 생성에 든 비용과 음원에 대한 수요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며, 이것에 기초해서 각 음원에 대해 각각 다른 가격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 인터넷 음원에 대한 가격은 이와는 무관하게 한 곡당 500원으로 평준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음원에 따라 과다이익 혹은 과소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물론 이렇게 가격을 동일

하게 책정하더라도 음원에 대한 수요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수요가 높은 음원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음원 자체의 가치가 원래부터 정확하게 고려된 차별화된 음원가격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음원의 가치가 정확히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런 이유가 발생한 이유는 음원의 가치에 대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나의 음원을 얼마동안 감상하는가, 몇 번이나 감상하는가, 누구와 함께 감상하는가 등에 따라 음원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한 후 음원판매 때마다 이를 고려해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이다.

한편, 인터넷 음원에 대한 사적재산권은 제3자의 재산권 침해에 의해서도 불완전한 양태를 보인다. 먼저 민간에서의 제3자에 의한 사적재산권 침해의 양태를 살펴보자. 먼저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음원의 복제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사실 계약의 입장에서 본다면, 음원소유자는 음원과 음원가격을 교환하였기 때문에 음원판매 이후에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복제에 대해 자신의 사적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원의 원소유자로부터 구매한 음원을 복제하는 행위가 사적재산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제도에서는 이를 사적재산권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른 재화와는 달리 음원에 대해 이런 특별한 제한을 하는 이유는 그것의 복제로 인한 시장붕괴와 사회에 미칠 부(-)의 효과 때문이다. 음원과 같이 복제가 쉬운 재화에 대해 복제라는 행동을 할 권리까지 사적재산권의 범위에 두게 되면 음원유통은 원저작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원구매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해당 음원의 시장가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음원의 원저작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런 상황이라면 음원의 원저작자는 굳이 음원을 개발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사회전체로 음원의 생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음원에 대한 복제와 이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당연히 사적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인터넷 음원에 대한 이런 불완전한 사적재산권 상황은 어떻게 해소되어 왔을까?, 이제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여기에는 민간과 정부의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인터넷 음원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인터넷 상에서의 음원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민간과 정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원에 대한 사적재산권은 완벽하게 완전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런 인터넷 음원에 대한 사적재산권의 불완전성이 어떤 식으로 해소되어 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인터넷 음원의 문제만이 아닌 현실에 존재하는 사적재산권의 불완전성의 양태를 확인하

고 앞에서 제시한 그 해소 메커니즘에 대한 가설을 입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적재산권의 불완전성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인터넷 음원에 대한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의 해소

1) 온라인 음원 시장의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2000년경부터 오프라인의 음악시장의 매출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아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2003년에는 온라인 음원시장의 규모가 오프라인을 초과한 이래 음원시장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는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과거의 음악에 대한 수요가 음반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던데 비해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음원을 구매하여 이를 컴퓨터나 휴대용 플레이어를 통해 감상하는 것으로 음악 구매의 패턴이 변화한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음원의 구매, mp3 같은 디지털기술로 압축된 음원에 대한 수요 급증, 그리고 휴대 폰 보급의 보편화로 인한 벨소리나 통화연결음과 같은 새로운 음원서비스의 출현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전통적인 음반사업자가 이렇게 팽창된 온라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온라인 음원시장의 팽창에 일조하기도 했다.

<표 1> 음반산업과 디지털 음원산업 매출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음반산업	3,733	2,861	1,833	1,338	1,087	848	788	811
인터넷 음원사업	911	1,349	1,850	2,112	2,621	3,562	4,276	5,264
계	4,644	4,210	3,683	3,450	3,708	4,410	5,064	6,075

출처: 음악산업백서 각년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런 인터넷 음원시장의 확대는 전통적인 음반시장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즉 과거의 음악시장은 오프라인에서 음반의 제작과 이의 유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라는 고리로 연결되었지만, 아래 <표 2> 와 같이 온라인 시장은 매우 다양한 사업모델을 통해 그 시장이 획기적으로 팽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온라인 음원시장의 사업모델은 크게 인터넷 음원시장과 모바일 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인터넷 음원시장은 다시 다운로드 시장과 스트리밍 시장, 모바일 시장은 다시 휴대폰 벨소리(Ringtone), 휴대폰 원음벨소리(Ringtune), 휴대폰 통화연결음(Ring-back tone), 전체 곡 다운로드(Full-Track D/L) 시장 등으로 구분되는 등 한

마디로 인터넷을 통해 음원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면서 음원을 통한 이익실현의 방식과 가능성이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증대되게 된 것이다(이은민, 2005).

<표 2> 온라인 음악산업의 대표적 비즈니스 모델

분류		내용	
인터넷 음악	다운로드	Digital Download	- iTunes의 A la cartel download model - 음악을 소유하려는 소비자의 욕구만족
		Portable Subscription Download	- Napster가 채택하였던 모델 -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동성 제약의 해결
	스트리밍	Streaming Subscription	- 월정액으로 다양한 음악 선택취취 - 다운로드가 안 되어 음원 소유권은 없음
		Streaming Radio	- 월정액으로 다양한 장르음악을 제공 - 메이저 음반사에 의한 스트리밍 라디오 프로그램 서비스
모바일 음악	Ringtone		- 원곡을 가공한 휴대폰 벨소리
	Ringtone		- 원곡의 일부를 잘라서 사용한 휴대폰 벨소리
	Ring-back tone		- 휴대폰 통화연결음
	Full-Track D/L		- 음악 전곡 다운로드

자료: OECD, Digital Broadband Content: Music(2005)

물론 온라인 음원시장은 원래 P2P 서비스 기술이 개발되면서 음원의 무료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잠시 동안 극심한 침체기를 맞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 음원의 불법복제 및 유통이 매출과 이윤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Peitz & Waelbroeck, 2004, Liebowitz, 2006, Ahn & Yoon, 2009). Liebowitz(2006)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디지털 기술의 등장 이후 CD 판매가 30% 이상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온라인 불법복제가 시장축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신일순, 안일태, 2010).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의 경우 온라인 음원시장의 불법복제 및 유통이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기도 하다(오정일, 박민수, 2006).

그러나 이런 온라인 음악시장의 잠깐 동안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 1>과 같이 오프라인 음악시장과는 달리 온라인 음원시장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그 결과 온라인 시장에서 음원의 가치가 팽창하고 있다. 당연한 논리이지만 이런 인터넷 음원시장의 활성화는 사업자들에게 음원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얻을 기회를 확대시켰으며 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발시켰다. 인터넷 음원의 가치를 인식한 사업자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음원의 유료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음원시장의 활성화를 주도하였던 것이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 2003년에 애플의 아이튠스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인터넷 음원시

장의 활성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3년 7월에 벅스와 소리바다를 제외한 유선음악포털들이 유료화를 시작하였고,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에는 멜론(Melon), 도시락(Dosirak), 뮤직온(MusicOn)과 같은 이동통신 3사가 음원서비스 시장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2006년 2월에는 소리바다까지 유료화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 유료 음원서비스는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한정희, 정활식, 2007). 이외에도 SM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매니지먼트 회사는 자회사 가수들의 음악스트리밍과 디지털 음반의 유통을 위한 ilikepop을 운영하였으며, 도레미미디어, YBM 서울음반, 예당과 같은 전통적인 음반회사도 각각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전병준, 2005). 이런 유료음원의 거래는 이후 더욱 활성화 되어 대표적인 음원거래 포털인 멜론의 경우 2006년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은 무료회원을 포함해서 450만명, 정액제 유료고객이 65만명, 하루 방문자 수 40만명에 육박하는 등 급격하게 활성화 되어 갔다(유필화, 이석규, 김경식, 2006).

그런데, 이처럼 인터넷 음원시장이 팽창하자 인터넷 음원에 대한 원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음원에 대한 사적재산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음원의 시장가치가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사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의 사적재산권 실현을 위한 노력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음원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이는 음원 시장을 지속적으로 팽창시킴으로써 음원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데 대한 자신들의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미 밝힌 것처럼 초기에는 단순히 곡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던 음원이 휴대폰의 보편화로 벨소리와 통화연결음으로 그 비즈니스의 영역을 넓히게 되었고, 나아가 음원 포털사이트를 통한 광고 판매에까지 비즈니스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음원상품도 고객의 기호와 음원구매 성향에 따라 다양화함으로써 음원시장을 팽창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한편 음원에 대한 권리자들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해 음원에 대한 사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음원의 가치를 측정하고 음원에 대한 제3자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였던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키워드 차단, 텍스트 필터링,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한 필터링 등 다양한 필터링 기술의 개발이었다. 이 기술을 통해 저작권 보호가 요청된 음원 파일이 인터넷 유통 차단이 기대될 수 있었다. 그 만큼 음원에 대한 사적재산권의 보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음원에 대한 저작권자들은 법적으로도 자신의 음원에 대한 사적재산권의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음원시장의 팽창에 따른 것으로 만약, 음원시장이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충분히 커져서 그로부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다면 음

원의 권리자들이 이처럼 적극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냅스터나 소리바다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진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전까지는 인터넷 음원에 대해 사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던 저작자들이 자신의 사적재산권 하에 있었던 음원들에 대한 복제, 그리고 복제된 파일에 대한 교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온라인 음원시장의 활성화와 대비되어 전통적 음반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전통적인 수익채널에서 이윤을 창출해 오던 이들 저작자들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온라인 시장에서 음원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받고 그 만큼의 수익을 얻으려는 노력은 음원의 원저작자가 자신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P2P 서비스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 음원의 복제의 정당성과 복제된 파일의 교환에 대한 법적 정당성의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 음원 소유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인터넷 음원을 통한 수익의 규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그렇다면, 이런 음원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움직임은 어떻게 음원에 대한 불완전한 사적재산권 상태를 해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일까?, 이제 이를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기로 한다.

2) 거래비용의 감소

(1) 측정비용의 감소: 음원가치 측정기술의 발전

먼저 음원 가치에 대한 측정기술의 발전은 사적재산권을 보다 완전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음원에 대한 가치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 기술에는 무엇보다도 PC의 저장용량의 증대 및 프로세스의 발전과 함께 음악파일 압축 기술의 발달¹¹⁾, 그리고 초고속인터넷망의 발전 등이 있었다(정중호, 2006). 그리고 이런 기술은 음원 거래에 대한 거래비용을 0에 수렴시킨 결과(추연수, 2005, 장미혜, 이충한, 2006), 음원을 한 곡당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음원 하나의 가치가 시장에서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게 되었다.¹²⁾

11)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신호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처리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디지털화하여 코드화하고 이를 압축하고 재생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을 지칭한다. 음악에서는 MP3(MPEG Audio Layer-3) 및 WMA, AAC 등 음질의 저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압축기술이 등장하여 인터넷 음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었다(정중호, 2006).

12) 즉 인터넷 음원은 인터넷 상에서 음악의 제공자가 디지털 음악을 직접 수요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대량 음반제작이나 유통단계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이다(박진영, 2008). 즉 인터넷 상에서의 음원의 제작에 있어서는 제작자와 유통업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디지털 음악을 제작하고

먼저 인터넷 시장에서 음원의 거래가 활성화 된 데는 동영상 압축과 코드 표현을 연구하는 집단인 엠펙(MPEG)의 압축표준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표준기술을 기반으로 나온 mp3 음악파일은 기존에 비해 1/10으로 그 용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때문에 음원의 거래가 쉽게 유통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김태훈, 양정환, 2010). 그리고 이런 mp3 파일의 등장과 함께 1994년엔 Benc가 1997년에는 winamp와 같은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고 급기야는 mp3 파일을 휴대용으로 감상할 수 있는 mp3 플레이어가 개발되면서 인터넷 음원시장의 활성화가 본격화 되었다.

한편 음원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기술적 발전을 토대로 인터넷에서의 음원 거래가 곡당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렇게 곡 단위로 유통되는 음원의 양을 인식하고 그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었다. 사실 인터넷 상에서 음원의 유통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2001년까지만 해도 개별 디지털 콘텐츠를 인식하고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에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한 음원 사용에 대한 정산이 불가능하였다(김태훈, 양정환, 2010:67).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음원의 판매는 음악의 생산 및 유통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어 곡당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실 아래 <표 3>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전통적인 음반의 제작은 크게 물류/유통비, 제작비, 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었고 10만장 기준으로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음반을 만들려면 총 54,867만원이나 되는 거금이 소요되었으며 곡당 원가역시 549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처럼 오프라인으로 음반을 제작할 경우에는 음반하나에 하나의 곡, 혹은 단지 3-4개의 곡만을 실어서 판매한다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다. 많은 금액을 소요하고도 음반이 판매되지 않으면 매출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곡을 작게 수록할수록 곡당 원가가 올라가기도 했다. 따라서 음반 제작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음반에 10곡 내외의 곡을 실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음원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음악의 생산에 드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다. 물류/유통비가 0에 가깝게 수렴하였으며, 제작비를 구성하는 재킷 디자인, 임가공비, 인쇄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음반제작에서 개발비의 각각 9.1%, 18.6%를 차지하던 홍보비와 운영개발비 역시 절반이상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 곡당 원가도 270.5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이런 곡당 원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비용, 즉 거래에 드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게 된 것이다.)¹⁾ 반면 전통적인 음반산업의 경우 아티스트와 아티스트의 음악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선투자를 지출해야 하고, 또한 음반제작 이후에도 녹음, 홍보, 유통비용을 막대하게 지출해야 했다(정중호, 2006).

의 감소와 굳이 음반으로 제작을 하지 않고서도 곡당 거래 가능해진 기술 환경의 변화는 음원 하나하나의 가치가 좀 더 정확하게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이처럼 전통적인 음반시장에서 음원의 거래는 몇 곡을 묶어서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이제 곡당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음원에 대한 가치실현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이은민, 2005, 박진영, 2008).

〈표 3〉 음반제작원가와 음원제작원가 비교

비용항목		음반제작 (10만장 기준)	음원제작 (온라인 유통)
물류/유통비		9,217만원(16.8%)	-
제작비	재킷 디자인	500만원(0.9%)	-
	임가공비	5,000만원(9.1%)	-
	인쇄비	8,000만원(14.6%)	-
개발비	작품/편곡비	3,700만원(6.7%)	3,700만원
	세션/녹음비	3,800만원(6.9%)	3,800만원
	뮤직비디오 제작비	5,000만원(9.1%)	5,000만원
	교육/연습비	2,000만원(3.6%)	2,000만원
	홍보비	5,000만원(9.1%)	5,000만원
	운영관리비	10,200만원(18.6%)	5,100만원
	가수전속금, 인세	1,200만원(2.2%)	1,200만원
	기타경비	1,250만원(2.45)	1,250만원
비용합계		54,867만원(100%)	27,050만원
곡당원가		549원	270.5원

* 음원제작의 경우, 온라인 유통에 의해 운영관리비가 음반제작의 경우보다 50%감소되고 곡 당원가가 총 제작비의 10%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수치임.

출처: 오정일, 박민수, 우리나라 온라인 음악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산업경제연구」 제19권 제1호, p.178, 2006.

과거 음반판매에서와 같이 여러 작곡가가 생산한 여러 곡을 한꺼번에 정액으로 판매할 경우 한 곡의 시장가치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며, 그 결과 개별음원에 대한 권리가 정확하게 시장가격에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구매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선호하는 곡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 음반 하나를 모두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만약 구매자가 음반 하나를 구매했을 때, 그가 하나의 음반 속에 들어있는 음원들 중 어느 음원에 대해 얼마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음원의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음원 하나하나만을 판매하기에는 제작과 유통에 따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음원을 묶어서 판매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경우 음원하나 하나로 시장거래가 이루어질 때 보다 소비자의 음원구매에 있어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음원만을 구매할 수 있을 때 소비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음원의 구입을 정확하게 하게 되지만, 자신이 선호하지 않은 여러 개의 음원을 함께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경우 하나의 음원만을 구매할 수 있을 때 보다 소비자의 음원 구입의 왜곡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에는 여러 곡을 하나로 묶어 판매한 결과, 개별 곡의 가치가 정확히 거래되지 못했던 것이 기술의 발전으로 음원 하나하나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실현이 보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곡을 하나로 판매할 경우, 분명히 하나하나의 곡에 대한 시장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반영되지 않은 채 한 묶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곡간 가치의 외부효과가 발생되지만, 한 곡당 거래가 가능하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곡에 대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원하나하나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정확하게 구현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인해 최근 가수들의 음악제작과 발표를 보면 과거처럼 음반단위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싱글¹³⁾의 형태로 한 곡의 신곡을 발표한 후 이들 곡들에 대해 음원단위로 활동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의 음원은 한곡당의 거래를 넘어서 벨소리와 같이 하나의 음원 중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만 거래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벨소리의 경우 온라인 음원산업 매출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¹⁴⁾

한편 인터넷에서의 음원의 거래는 파일유통방식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과 다운로드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중 스트리밍 방식의 경우 각 음악포털에서처럼 월정액으로 음원에 대한 감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원의 감상시기를 정확하게 정하는 등 음원 가치의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정하게 되어 지적재산권이 보다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들어, 과거 Napster가 출시한 음원거래 모델을 보면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음원을 최대 5번까지는 무료로 감상할 수 있지만 6번째부터는 0.99센트에 구입하거나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했다. 결국 이를 통해 음원의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거래될 수

13) 디지털 싱글은 노래 및 반주 음악, 가사, 가수 사진, 스크린 세이버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발매되는 디지털 음악 유통방식이다. 2000년대 중반 들어서서 이런 디지털 싱글은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14) 벨소리/통화연결음 등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매년 57%씩 성장하며 2004년 1천8백억 시장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체 온라인 음악시장의 91%, 음악시장 전체의 55%에 해당할 만큼 큰 규모이다(이은민, 2005).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음원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원의 가치가 정확하게 시장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상품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구조, 상품의 특성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음원의 가치에 대한 측정기술이 여전히 발전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에서 인터넷 음원에서 사적재산권의 불완전한 양태에서 밝힌 것처럼 음원의 가치가 정확하게 측정되어 이에 대한 재산권이 명확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개의 음원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감상했는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가치가 차별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은 여전히 상당부분 공백상태에 있다.

(2) 감독비용의 감소: 음원가치에 대한 보호 장치

한편, 음원에 대한 가치는 음원에 대한 불법복제 등과 같은 음원에 대한 사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감독비용이 줄어들면서 점차 완전해져가기도 했다. 이런 감독비용의 감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 하나는 민간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이다.

먼저 이미 밝힌 것처럼, 민간에서는 음원에 대한 불법복제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먼저 음악산업계는 음원 사용자들의 복제나 변형을 통제할 수 있는 압축포맷을 개발하는데 기술적인 대응을 실시했는데 이런 경향은 과거 ‘암호화 디지털음악 발의자 모임(Secured Digital Music initiatives:SDMI)’라는 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인터넷에서의 음악 콘텐츠의 유통에 필요한 공개기준을 마련해서 복제방지기술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던 데서 출발한다.¹⁵⁾ 당시 이들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1999년 6월에는 휴대형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 규격 버전 1.0을 발표하기도 했다(전병준, 2005). 물론 이런 이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소니를 비롯한 전자기업들이 이렇게 잠금장치가 포함된 장치가 설치될 경우 자사가 판매하는 컴퓨터 및 관련 음원재생기기의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보아 이런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현하였기 때문이다.¹⁶⁾ 그러나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SDMI는 인터넷 음원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최초로 시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15) SDMI에는 당시까지 음반업계의 빅5를 중심으로 RIAA, RIAJ, AOL, AT&T, IBM, MS, Matsushita, Toshiba, Diamond Multimedia 등과 같은 정보통신산업 전 부분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6) 이런 암호화 기술의 발전은 인터넷 음원에 대한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터넷을 통한 음원소비자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전병준, 2005).

또한 이런 음원 보호기술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해 원저작자에 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었다. 키워드 차단이나 텍스트 필터링 방식, 그리고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필터링 방식,¹⁷⁾ 디지털 워터마크 제도,¹⁸⁾ 그린파일 제도¹⁹⁾ 등과 같은 다양한 음원 필터링 기술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중 특히 음성인식기술을 활용한 필터링은 필터링율이 98%에 이르기도 했다. 당연히 이런 필터링 기술의 발달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을 감시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주는 것들이었다.

한편, 음원에 대한 다운로드에 있어서 DRM을 입혀서 한번 음원을 다운 받으면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기간과 플레이어 디바이스의 개수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원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은 다수에 대해까지 음원 감상이 가능한 것, 역시 음원 사용에 대한 사적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예를들어, 음원 포털 중 하나인 Weed의 경우 P2P 방식으로 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이들 사용자들은 각각 음원을 3번까지는 무료로 들을 수 있지만 더 들으려면 이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고, 지불 후에는 음원을 디지털 기기나 CD로 옮길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3대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정중호, 2006). 한편 Spiralfrog에 등록된 사용자들은 무제한으로 음악과 뮤직비디오 등을 다운받을 수 있지만 다운로드 한 음악을 CD로 복제할 수는 없도록 처리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음반으로 거래되던 음원의 경우에는 한번 음반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런 음반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무제한적인 기간에 대해 무제한의 기계로 감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음원의 사용에 대한 외부효과가 심각하게 나타났던 것에 비하면 사적재산권의 보호가 점차 완전하게 되어 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 기술로 인해 민간에서 음원에 대한 권리주체가 자신의 음원이 침해받는 것에 대한 감독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7) ERTI에서 개발된 것으로 저작권 보호요청이 된 음악파일에서 음성지문을 추출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서 동일한 지문을 갖는 음악파일이 P2P 시스템에 유통되려고 할 때 이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P2P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파일명과 같은 메타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의 필터링 기술인 키워드 차단이나 텍스트 필터링 방식보다 효과적인 것이었다(김태훈, 양정환, 2010:101).

18)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는 디지털 콘텐츠에 자신의 저작권을 삽입 및 표시를 하거나 영상, 음성 등의 신호에 특정한 유형/코드를 삽입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불법복제, 불법 퍼날르기를 방지하고, 콘텐츠 소유자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다. 디지털 워터마크는 방문자 및 사용자가 이미지, 영상물을 보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있어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원본의 출처/복제 경로 파악이 가능해 아주 효과적이다(위키백과사전).

19) 웹하드 또는 다운로드 사이트들이 저작권자랑 합의를 맺고 수수료내지 라이선스 비용내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물론 이런 DRM에²⁰⁾ 대해서는 스티브잡스가 2007년 그 유용성에 대해 공개적인 의문을 제기한 이후 급속도로 그 적용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는 DRM의 적용으로 인해 설령 인터넷 음원에 대한 사적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이 인터넷 음원시장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하기에 결과적으로 인터넷 사업자 모두에게 손해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구나 DRM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규모일 뿐더러 DRM이 실제로 인터넷 음원의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웠다. 예를 들어 2006년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DRM을 입힌 채로 판매된 음악이 20억곡인데 비해 DRM이 없이 CD로 팔린 음악은 200억곡이 넘는다. 이런 CD로 배포된 음악은 쉽게 인터넷에 업로드 될 수 있기에 얼마든지 불법적인 다운로드가 가능했던 것이다(김태훈, 양정환, 2010:164). 그러나 DRM과 관련한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인터넷 음원에 대한 사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감독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간의 사업자의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편 감독비용의 감소를 위한 기술의 발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Apple의 방식이었다. 즉 Apple의 경우 자사의 mp3 플레이어인 iPod를 널리 보급하고 이를 자사의 유료 음악 포털사이트인 iTunes Music Store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iPod에서만 감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작-유통-단말 사업 간의 수직통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런 음원의 가치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이은민, 2005). 원래 인터넷 음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P2P를 통한 음원 다운로드 방식이었다. 다운로드의 경우 P2P를 통한 음원의 무제한적 배포가 가능해 질 수 있어서 음원의 가치에 대한 사적재산권의 보호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의 냅스터 사례나 우리나라의 소리바다의 사례는 이런 문제가 가시적으로 표출되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논의는 음원 복제기술을 만드는 것이 불법이나 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나의 논의로 복잡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음원에 대한 P2P 서비스의 불법논쟁과²¹⁾는 무관하게 여전히 P2P 기

20) DRM이란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소유자, 사용권 소유자, 사용기간, 요금, 사용횟수 등에 대해 세부적인 기술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김후종, 나승원, 2003).

21) 당시 법원의 판례에서 복제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기술 그 자체를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냅스터에 대해서는 검색서버를 회사가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복제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으로 판단하였다. 동일한 논리로 그록스터에 대해서는 냅스터와는 달리 음악파일이 들어 있는 중앙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영하지 않았기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물론 이런 그록스터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27일 미국 연방법원은 그록스타가 이 프로그램을 저작권일 침해하려는 이용자들을 위해 만들어 운영한 것이 분명하다며 그 의도의 악의성을 근거로 불법으로 판정하였다. 한편 소리바다¹⁾에 대해서는 음악파일의 저장과는 무관하게 소리바다가 사업운영을 위해 회원 간 커넥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던 인터넷 데이터센터의 서버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런 우리나라의 판결은 미국보다 엄격하게 복제에 대한 입장

술을 사용해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음원을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사적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이런 Apple의 방식은 음원을 유통하는 사업체가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음원유통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이렇게 얻어진 권리를 음원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인터넷 음원에 대한 사적재산권의 보호에 드는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도 했다.

한편, 인터넷 음원에 대한 사적재산권의 침해는 정부에 의해 보호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음원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는 개개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음원을 스스로 보호하는데 따른 감독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불법음원의 거래에 대한 보호의 제도화는 온라인 유료음원시장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온라인 침해에 대한 민간의 직접대응에 따른 비용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받고 있다(이은민, 2005). 즉 저작자로부터 허락받지 않는 음원에 대한 유통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음원 권리자들의 몫을 명확히 할 것을 명시한 저작권법의 개정(2005.1)로 인해 음원에 대한 사적재산권의 보호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던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보더라도 저작권자와의 계약이 없는 음원의 거래는 불법적인 것이고 그 이유는 이들의 사적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였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적재산권 보호를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소리바다2에 대해서는 서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소리바다를 상대로 사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소리바다3에서 음원의 판매에 합의하지 않은 권리자들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사적재산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적재산권의 불완전한 양태와 그 원인, 그리고 해소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했다. 이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공유재산과 사적재산과 같은 재산권의 유형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사적재산권이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불완전하게 행사되는 양상이 만연함을 인식하고 그 원인과 해소조건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설명력이 높은 이론을 구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의 경우 복제행위와 이를 거래하는 행위자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행위자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 역시 불법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김태훈, 양정환, 2010).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적재산권은 재화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에 그 가치를 시장에서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와 제3자에 의해 자신의 재화가치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실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적재산권이 설정된 해당 재화를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미약하여, 그것을 통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재화에 대한 사적재산권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굳이 이를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실현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적재산권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너무 높은 비용이 들거나 타인의 사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데 드는 감독비용이 클 경우에도 사적재산권은 불완전하게 존재하였다. 따라서 사적재산권이 보다 완전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사적재산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충분할 정도로 해당 재화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재화에 대한 가치 측정기술이 발달해서 측정비용이 낮아져야 하며 사적재산권자 스스로에 의한 감시기술의 개발 및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감독비용이 낮아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인터넷 음원의 경우, 2000년 이후 이루어진 음원시장의 급속한 팽창은 음원에 대한 사적재산권을 보유한 당사자들이 자신의 음원 가치를 보다 완전하게 실현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음원 가치의 측정기술이 개발되어 측정비용이 낮아졌다. 특히 과거에는 음반 당 이루어지던 음원거래가 음원 당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음원 하나하나에 대한 시장가치가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거래가 가능해졌다. 또한 음원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민간의 권리자들에 의해 개발되었고, 정부 역시 저작권법의 개정 등을 통해 음원보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음원에 대한 감독비용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것이 여전히 불완전하긴 하지만 인터넷 음원에 대한 사적재산권이 좀 더 완전하게 실현되어 간 경로이다.

사적재산권의 불완전성을 탐구한 본 연구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그것은 사적재산권의 완전한 실현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 사용·수익·처분의 대상이 되는 개개 재화의 가치를 정확하게 분리하여 측정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민간에서도 그런 기술이 자생적으로 발생되었지만 만약 민간에서 이들 기술의 발전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측정기술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전체의 거래비용을 낮추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민간의 행위자들이 재산권 확정에 드는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재화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게 되면 해당 재화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 대한 파악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재산권 주체가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하는 배타적인 권리의 보장도 더욱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치다발로 구성된 재산권이 가치 하나하나

로 분할되면 될수록 해당 재산에 대한 이전가능성이 증대하여 사람들의 교환을 통한 가치 증식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가 제3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최종보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정부 스스로가 재산권 침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전제로 본다면 매우 당혹스런 사실이 아닐 수 없다. North(1990)가 지적한 것처럼 정부 없이 사는 것도 어렵지만 정부와 함께 살아가는 것 역시 어려운 것이라는 명제는 바로 이런 현실을 가감 없이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산권 이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가 사적재산권의 침해를 통해 민간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적재산권의 보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재화의 효율적 활용과 그로 인한 사회전체의 효율성을 사상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의 사적재산권 침해 행위가 사적재산권 소유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대가로 사회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라기보다는 특정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정부가 포획(capture) 된 결과 이들의 지대(rent)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제3자로부터의 사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최종보호자로서의 역할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들의 사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스스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에도 있다 할 것이다.²²⁾

이제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의 분석은 시장에서 사적재산권이 해소되는 경로에 주목한 결과 정부의 행위와 이것이 사적재산권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비교적 소홀히 이루어졌다. 특히 규제와 같은 재산권의 합법적 침해에 대한 해석이 이미 기존에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을 밝혀둔다. 인터넷 음원 사례에 있어서는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관점을 전제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사실(fact)이 틀리지 않게 노력하였지만 해석에는 달리 보는 의견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구성한 이론과 사례분석에 대한 반증을 위한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 재산권의 양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인 재화의 특성,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제도의 영향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에도 이 역시 상대적으로는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을 모두 반영할 경우 분석의 종합성과 망라성은 지닐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의 양태와 원인, 해소 메커니즘이 부각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추후 이런 본 논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22) Kasper & Streit(1998)은 이를 두고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참고문헌

- 고홍석·박재영(2008), “온라인 저작권 소송사례 비교분석: 한국의 소리바다와 미국의 그록스터 판결의 경우”,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1호.
- 권상로(2008), “인터넷 공유사이트를 통한 음악파일교환에 관한 연구: 소리바다 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0집.
- 김소영·곽영식(2006), “온라인-오프라인 음악 소비자의 시장세분화 연구”, 「소비자학 연구」, 제17권 제2호.
- 김왕석·성동규·김민정·김광협(2005), “파일공유 서비스와 인터넷 음악 저작권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9권 제1호.
- 김일중(1995), 「규제와 재산권: 법경제학적 시각으로 본 정부 3부의 역할」, 자유기업센터.
- 김태훈·양정환(2010), 「소리바다는 왜?: 대한민국 IT는 왜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지 못하는가」, 현실문화.
- 김후중·나승원(2003),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모바일 보안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정보처리학회 논문지」, 제10-C권 제6호.
- 도준호(2001),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여름호.
- 박세일(2000), 「법경제학」, 박영사.
- 박진영(2008), “뉴미디어와 음악산업의 변화에 따른 한국 음악콘텐츠의 미래와 과제”, 「음악과 민족」, 제32호.
- 신일순·안일태(2010), “온라인 음악시장의 성장과 DRM-free 판매 방식의 확대에 대한 이론적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 오정일·박민수(2006), “우리나라 온라인 음악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산업경제연구」, 제19권 제1호.
- 유필화·이석규·김경식(2006), “음악산업에 있어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인 SK Telecom의 멜론”, 「한국 마케팅저널」, 제8권 제3호.
- 이민창(2006), “재산권 이론의 정책학적 기여에 관한 소고: 이론적 함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4권 제2호.
- 이선호(2009),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한국 음악 산업의 경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 음원산업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음악교육공학」, 제8호.
- 이원재(2005), “온라인 음원 사용료에 관하여: 온라인상 음원사용료 담론의 허구성”, 지적재산권.
- 이은민(2005), “MP3 등장에 따른 국내 음악산업의 구조변화”, 「정보통신정책」 제17권 제23호.
- _____ (2006), “국내 인터넷 음악시장의 성장요인 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8권 제5호.
- 이종수·윤충한(2004), “온라인 음악의 확산이 오프라인 음악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 장미혜·이충한(2006),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음악시장 변화”, 「경제와 사회」, 제72호.
- 전병준(2005), “음원의 디지털화에 따른 음악시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4호.

- 정상조(2006), “인터넷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 회고와 전망”, 「저스티스」 제87호.
- 조지원(2000), “온라인 음악산업의 현황 및 전망: 냅스터와 미국 RIAA의 저작권 소송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 제12권 제6호.
- 최종욱(2000),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워터마킹 기술”, 「공학교육과 기술」, 제7권 제2호.
- 추연수(2005), “온라인 음원 사용료에 관하여: 음악콘텐츠 가격 정책에 관한 소고”, 지적재산권.
- 최효민(2004), “음악의 매력, 이제 음원이 결정 짓는다”, 「문화예술」9월호.
- 한정희·장활식(2007),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음악 저작권 침해 행동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제16권 제1호.
- Alchian, Armen A. & Harold Demsetz(1973), The Property Right Paradigm,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33, No.1.
- Anderson, T. L. & Hill, P.J.(1975), The evolution of property rights: a study of the American We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8.
- Angel, Shlomo(2000), “The Property Rights Regime”, *Housing Policy Matters: A Global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 Barzel, Yoram(1989), *Economic Analysis of Property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ung, Steven(1974), A theory of Price Contro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7.
- Crosby, Alfred W(1997), The Measure of Reality: Quantification and Western Society, 1250-1600, Cambridge University Press.(「수량화 혁명: 유럽의 패권을 가져온 세계관의 탄생」, 김병화 역, 삼산, 2005)
- Demsetz, Harold(1967), Toward a Theory of Property Righ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7, No.2.
- _____(1988),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ownership, *ownership, control and the firm*, 1988.
- Gordon, Scott.(1954), “The Economics of a Common Property Resource: The Fishe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2, No.2.
- Hardin, Garrett.(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 Kasper, Wolfgang & Manfred E. Streit(1998), *Institutional Economics: Social Order and Public Policy*, Edward Elgar.
- Knight, Frank.(1924), “Some Fallacies in the Interpretation of Social Cos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38.
- Libecap, G. D(1978)., Economic Variabl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law: the case of western mineral right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38.
- _____(1989), *Contracting for Property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Lueck, Dean.(2002), The Extermination and Conservation of the American Bison, *Journal of Legal Studies*, 31.
- Lueck, Dean, Miceli, Thomas J. Property Law(2007), A, M. Polinsky and S. Shavell, *Handbook of Law and Economics*, Amsterdam: Elsevier.
- Nicita, Antonio, Matteo Rizzolli & Maria Alessandra Rossi(2005), Toward a Theory of Incomplete Property

- Rights, ISNIE Conference, Universidad Pompeu Fabra, Barcelona, 22-25, Sept 2005.
- North, D. C. and Robert Paul Thomas(1973),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 A New Economic History*, Cambridge Univ.(「서구세계의 성장 - 새로운 경제사」, 이상호 역, 자유기업센터, 1999)
- North, D. C.(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fkin, Jeremy.(2004), *The European Dream: How Europe's Vision of the Future is Quietly Eclipsing the American Dream*, Penguin Group Inc.(「유러피안 드림」, 이원기 역, 민음사, 2005)
- Rose, Carol M.(1994), *Property and Persuasion: Essays on the History, Theory and Rhetoric of Private Ownership*, Boulder, Colo, Westview Press.
- Umbeck, John(1977), The California Gold Rush: A Study of Emerging Property Rights,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14*.

ABSTRACT

A Study of the Incompleteness of Private Property Rights: A Focus on the Rights to Sound Sources in the Internet Arena

Hyukwoo Lee

There is a lot of incompleteness in private property right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private property rights means perfectly excludable rights in terms of owning, using, acquiring, and disposing of assets, but these premises are hardly met in the real world. This is why attention must be paid to the thesis of the incompleteness of private property rights. There are two causes of this incompleteness: insufficient expected gains from an asset and high transaction costs in measuring the values of assets and excluding from any untitled uses. The market should exist to alleviate this incompleteness, and in this market assets could produce sufficient values, which give owners an incentive to utilize their own assets. Measurement costs need to be as low as possible from a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government should establish formal institutions for protecting private property rights from any violations.

【Key Words: private property rights, market, transaction costs, technological development, sound source in internet arena】